

特 輯

축사소독

얼마전 연건평 100 평을 넘는 축사에 대하여는 전문소독업체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여 한동안 파문을 일으킨 바 있었다.

양계를 하려면 소독이 얼마나 중요한데 소독을 안하는 양계장이 어디 있으며 보사부에서까지 소독을 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 양축가의 변이다.

더군다나 소독을 하되 소독전문업체가 이농장 저농장 찾아다니며 자기 입맛에 맞는 소독약으로 소독한다는 것이 더욱 못마땅했다.

양계업자들의 우리도 소독에는 전문가인데 알아서 할테니 걱정 말라는 제의에, 보사부는 종합병원도 소독업체가 하는데 무슨 소리냐고 반박하기도 하였으나, 다행히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축사나 종합병원 등은 자체적으로 소독을 시행하고 확인을 받도록 조치가 되었다.

이제 소독에 대해서 좀더 깊은 지식이 필요하고 법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소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독의 필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올바른 약제선택과 올바른

사용이 요청되고 있다. 그만큼 어깨넘어로 배운 소독에 관한 지식이 잘못알고 있는 것은 없는지 미처 모르고 있던 것은 없는지 이번 기회에 재정비하고, 또 양계를

처음 시작하는 농장이나 양축가와 접촉이 많은 사료 약품 병아리 기계기구 판매원들까지도 이 되도록 소독에 관한 특집을 만들어 보았다.

농수산부령 제 935 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1985. 6. 11.

농수산부장관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중개정령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 조(소독 등의 명령) ① 가축의 소유자중 300 제곱미터 이상의 축사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는 매월 1회 이상 축사 및 그 주위에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독 실시에 관한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법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가축소유자 및 운송업자에 대한 소독명령이나 쥐, 곤충 등을 없애는 명령은 별지 제 3 호서식의 명령서에 의한다.

③ 가축방역관은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과 쥐, 곤충 등을 없애는가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